경영유의사항 등 공개안

1. 금융회사명 : 동원제일저축은행

2. 조치일 : 2022. 10. 12.

3. 조치내용

제재대상	제 재 내 용
기 관	경영유의사항 1건, 개선사항 1건

4. 조치대상사실

가. 경영유의사항

(1) 여신수수료 수취업무 관리강화

여신수수료 수취업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등을 위반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규를 정비하는 한편, 해당 업무 운영실태를 재점검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① 서비스 대가가 불명확한 수수료 수취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제②항 등에 의하면 상호저축은행은 차주를 위해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수취하는 경우 이외에 수수료 기본성격에 위배되는 수수료를 징구해서는 아니 되는데도,

◈◈◈◈◈◈◈◈◈◈(주) 등 ▲▲개 차주에 대해 대출을 취급하면서 제공한 서비스가 명확하지 아니한 수수료 ○억 ○○백만원을 수취함

② 중도상환수수료 차등 부과기준 마련 및 운영 미흡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 '대출규정' 제43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대출 중도상환수수료율은 2% 범위 이내에서 대출비용 등을 고려하여 대출종류별*로 차등하여 잔여대출기간에 따라 대표이사가 정하도록 하고 있는데도,

* 변동금리 및 고정금리대출, 신용 및 담보대출, 가계 및 기업대출

개인신용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율을 1.9%로 적용한다는 기준 외에 「수수료 등에 관한 규정」 등 내규에 여타 대출별 중도상환수수료를 차등 부과하는 기준을 마련·운영하고 있지 아니함

③ 여신수수료 회계처리 미흡

「저축은행 회계처리해설서」 제3장 제2절 제4항 등에 의하면, 용역제공이 진행됨에 따라 가득되는 수수료인 대리사무취급수입수수료 및 한도약정수수료는 관련 용역이 진행됨에 따라 이연하여 수익을 인식하고, 중요한 행위를 수행함으로써 가득되는 수수료인 주간수수료는 다른 참여자와 동일한 유효수익으로 신디케이트에 참여하는 경우 대출이 개시되는 시점에 일시 수익으로 인식하여야 하는데도,

대리사무취급수입수수료 및 한도약정수수료 중 일부를 현금수취 시점에 일시 수익 인식하거나 신디케이트론 주간수수료(다른 참여자와 동일한 유효수익으로 참여) 중 일부를 이연하여 수익 인식함

나. 개선사항

(1) 대출청약철회 기간 중 청약철회에 대한 설명 및 고객의사확인 절차 강화

「상호저축은행 여신거래기본약관」 제4조의2 등에 의하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소비자의 청약철회 의사표시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상호저축은행은 청약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하여야 하는데도,

20xx.xx.x.~20xx.x.xx. 기간중 대출실행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고자 한 ◎◎◎ 등 차주 ◈◈명에 대해 콜센터 상담 또는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 청약철회에 대해 설명하거나 소비자의 청약철회 관련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 없이 반환총액(중도상환수수료 포함) 및 반환 계좌번호만을 안내하여 중도상환수수료 ◆백만원을 청구·수취한 사실이 있으므로

앞으로 금융소비자가 대출실행일 등으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 원리금 전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 청약철회에 대해 설명하고 소비자의 청약철회 관련 의사를 확인하여 처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시기 바람